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2943 |
|----------|------------|

제안년월일 : 2025년 9월 2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공연, 행사 등의 분야에서 재능을 나누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조문에서 용어를 통일성 있게 조정하며, 인용 법령의 조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 골자

- 관련 법령 조항을 명확하게 인용함(안 제14조제2항 제3호, 제4호, 제8호).
- 기존 감면 대상자의 표현을 개선함(안 제14조제2항제10호).
- 용어를 통일성 있게 조정함(안 제14조제2항제10호, 제15호, 제16호).
- 재능 기부 또는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14조제2항제18호 신설).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2항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  
의 사람으로 신분증”을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 중 “경우, 이때 참여인원은 50인 이하로 제한한다.”를  
각각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8.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14조(이용료) ①<br>(생략)                                                                         | 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 제14조(이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                        |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br>-----<br>-----<br>-----<br>-.           | ② -----<br>-----<br>-----<br>-----<br>-.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행사                                           | 1. 한강-----<br>----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 | 1. (개정안과 같음)                                 |
|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65세 이상 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2. -----<br>-----<br>-----<br>----- 1명 -----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신설〉</p> <p>3. (생략)</p> <p>4. <u>시장이 주관하거나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u></p> <p>5. <u>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u></p> |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p> <p>17. (현행 제3호와 같음)</p> <p>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p> <p>17. (개정안과 같음)</p> <p>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p> <p>5. (개정안과 같음)</p> |
| <p>〈신설〉</p>                                                                                                                                    | <p>6. ~ 7. (생략)</p>                                                                                                                                                             | <p>6. ~ 7. (개정안과 같음)</p>                                                                                                                  |
| <p>〈신설〉</p>                                                                                                                                    | <p>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 <p>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p>                                                                                        |
| <p>〈신설〉</p>                                                                                                                                    | <p>9. (생략)</p>                                                                                                                                                                  | <p>9. (개정안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신설〉 | 10. 6세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신분증 제시한 경우                                                   | 10. ----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                                               |
| 〈신설〉 | 11. ~ 14. (생략)                                                                           | 11. ~ 14. (개정안과 같음)                                                                 |
| 〈신설〉 | 15.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 이때 참여인원은 50인 이하로 제한한다.   | 15. -----<br>-----<br>-----<br>-----<br>-----<br>-----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
| 〈신설〉 | 1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 이때 참여인원은 50인 이하로 제한한다. | 16. -----<br>-----<br>-----<br>-----<br>-----<br>----- 경우<br>(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 <p><u>〈신설〉</u></p> <p>③ ~ ⑦ (생략)</p> | <p><u>18.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u></p> <p>③ ~ ⑦ (개정안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을 “한강”으로, “관련된”을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을 “시범적”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5.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1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폐기물 감축 및 분리수거 홍보 등) ① 시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에 기여한 시민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이용료) ① (생략)                                                                            | 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 ② -----<br>-----<br>-----<br>-.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행사                                           | 1. 한강-----<br>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     |
|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65세 이상 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 〈신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사람 |
| 3. (생략)                                                                                     | 17. (현행 제3호와 같음)                                 |
| 4. 시장이 주관하거나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신설〉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5. (생략)                                                                                     | 18. (현행 제5호와 같음)                                 |
| 〈신설〉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

〈신 설〉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신 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 설〉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  
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신 설〉

15. 「초·중등교육법」, 「유아  
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  
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  
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1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  
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시범적-----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폐기물 감축 및 분리수  
거 홍보 등) ① 시장은 한강공원  
을 이용하는 시민이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에 기여한 시민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다.